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6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서영석 · 이해식
김남근 · 황명선 · 한준호
강준현 · 박수현 · 곽상언
이재관 · 정태호 · 서삼석
김승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,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(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

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.

-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, 절차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,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.

나.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(안 제5조)

-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후신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.
-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함.

다.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강화(안 제28조제2항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이행강제력 제고(안 제21조, 제23조, 제35조 및 제37조)

-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

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.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정 명령 및 주식 등의 양도 명령을 미이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-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·등록하지 않거나, 제4조4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한 자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제4항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.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.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제2항제1호의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외국인투자 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다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⑤ 제4항의 심의·제한의 대상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”를 “각 목 또는 제4조제4항 후단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또는 제4조제4항 후단의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신고할 수 있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신고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1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

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준”을 “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이행강제금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정 명령을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

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각각 “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제1호 중 “투자한”을 “투자하거나 투자할”로 한다.

②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, 관세청장, 경찰청장, 특허청장, 금융감독원장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,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대외무역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업”을 “법인 또는 기업”으로, “1년”을 “5년”으로, “1천만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 중 “제28조제5항”을 “제28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조제4항의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 법에 따른 신고·등록(변경등록 포함)하지 아니한 자

2. 제4조제4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(변경등록 포함)한 자

3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제4항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

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,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벌칙)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7조(종전의 제36조) 본문 중 “제35조”를 “제3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제2항제1호의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외국인투자 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⑤ 제4항의 심의·제한의 대상 및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④ (생략)</u>	<u>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
제5조(외국인투자 신고) ① 외국인(제2조제1항제4호가목2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제5조(외국인투자 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. 〈단서 신설〉

1. ~ 6. (생략)

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

----- 각 목 또는
제4조제4항 후단의 -----

 -----.

(2) -----

다만,
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또는 제
4조제4항 후단의 외국인투자자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
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
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

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제21조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

① · ② (생략)

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-----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---. 다만, 해당 신고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1조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④ (생략)

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⑥ (생략)

<신설>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 요건-----
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심의를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이행강제금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1

제24조(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·도지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, 국제수지,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·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·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·도지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

① (생략)

<신설>

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
제24조(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) ① -----
----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, 관세청장, 경찰청장, 특허청장, 금융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1. 외국인이 <u>투자한</u> 자금(출자 목적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자본재의 도입·사용·처분에 관한 사항 2. 삭 제 3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 제3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<u>기업</u>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	<u>감독원장, 개인정보보호위원장,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대외무역법」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투자하거나 투자할</u> 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⑧ (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 제35조(벌칙) ① ----- -----<u>법인 또는 기업</u>-----
---	---

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1. (생 략)

2.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
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
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
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
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
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

3.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
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
니한 자

<신 설>

-- 5년 ----- 5억원 -
-----.

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
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
제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
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
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<삭 제>

3. 제28조제6항-----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다.

1. 제4조제4항의 심의대상임에
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 법에
따른 신고·등록(변경등록 포
함)하지 아니한 자

2. 제4조제4항의 심의와 관련하

	<u>여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(변경등록 포함)한 자</u> <u>3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조 제4항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</u>
<u><신 설></u>	<u>제36조(벌칙)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
<u>제3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</u>	<u>제37조(양벌규정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6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u>제37조</u>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38조</u> (현행 제37조와 같음)
---	--